

울산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437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결 2021. 3. 10

판 결선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3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전무 이사, F는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였다.

나. C와 F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와 F는 공모하여 2017. 11. 3.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F는 피해자 A(이 사건의 원고임)에게 "3만 달러를 투자하면 중국 위해에 있는 E 외환딜러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운용하여 1년간 매달투자 이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1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C는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내가 중국 출장 중이다.

F 상무에게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면 투자 이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와 F는 중국 위해에서 외환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C와 F 및 소외회사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와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인 이 사건 청구금액(25,633,5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C가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피고의 계좌로 편취금을 빼돌리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25,633,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5,633,500원 = 2017. 11. 4. 자 400,500원 + 2017. 11. 11. 자 1,000,500원 + 2017. 11. 15. 자 18,000,500원 + 2017. 11. 15. 자 4,330,500원 + 2017. 11. 15. 자 3,300,500원).

11. 24.자800,500원 + 2017. 12. 11.자 100,500원 + 2017. 12. 14.자 1,000,500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LH임대아파트 퇴거시 3차례에 걸쳐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불과할 뿐 피고가 원고의 돈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갑 제2, 4, 5, 6, 9, 10, 11, 12호증,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갑 제1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피고가 배우자인 C의 원고에 대한 범죄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및 C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고가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없다.

오히려,갑 제10호증,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7. 11. 3. 원고로부터 편취한 3, 300만 원은 그날부터 2017. 11. 10.까지 사이에 G, F, H, I, J 등에게 송금되어 전부 소진된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배우자인 C의 농협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인 사실이 인정된다(특히원고가 주장하는 2017. 11. 15.자 18,000,500원은 갑 제2호증 중거래내역에 피고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 증거상 상대방 계좌로 기재된 [국민은행] K 번호는 피고가 2017. 10. 21.자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L의 은행 계좌이다,을 제5, 7호증).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정석